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0. 26 선고 2022가단1040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지배인 B, C

피 고 D

소송대리인 E

변 론 종 결 2022. 10. 12.

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2021. 11. 17.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E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22. 1. 21. 접수 제27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1) 소외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5,000,000원으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2) G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계약을 각 체결한 후 금전을 각 대출받았으나, 위 각 약정에 따른 거래과정에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그 후 소외인에 대한 주식회사 F의 대출금 채권은 2016. 4. 29.경 원고에게, G 주식회사의 대출금 채권은 2015. 9. 16. 주식회사 H를 거쳐 2021. 1. 28.경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고, 채권양도사실을 소외인에게 각 통지하였다.

다. 2022. 2. 27. 현재 원고가 양수받은 소외인의 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F 대출금 : 원금 2,767,552원, 이자 3,455,233원

2) G 주식회사 대출금 : 원금 6,183,449원, 이자 11,765,530원 3) 합계 : 원금 8,951.001원(= 2,767,552원 + 6,183,449원)

이자 15,220,763원(= 3,455,233원 + 11,765,530원)

라. 소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21. 11. 17.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그 자녀들인 소외인 및 J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21. 11. 17.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22. 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위 협의분할 당시 소외인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호증의 각 1, 2, 갑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각 채권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원고에 대한 채무 등 부채만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한 것으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소외인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소외인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4472 판결 등 참조).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친정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매매대금으로 취득한 후 그 소유 명의만을 망인 명으로 한 것으로 실제로는 피고의 소유인 바, 망인의 사후 피고 명의로 소유 명의를

회복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소외인의 채무관계를 전혀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당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위 2/7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22. 1. 21. 접수 제27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현기

부동산의 표시

1 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72.9 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 906.3 m²

대지권의종류: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906.3 분의 41.18

